

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

*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2일
신청인	성명	■ 아동과의 관계 ▶ 본인 [] ▶ 친생부모 [] ▶ 후견인 [] ▶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[]		
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
	연락처			
입양 대상 아동	성명	보호개시일(입양대상아동 결정일)		
	주민등록번호	보호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		
	주소			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첨부서류

신청인과 입양대상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신청인이 아동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